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정 2023.08.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극동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창업을 지원하며,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돕고, 창업기업의 관리 및 교원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기술, 연구 활동 및 근무 중 습득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학내·외 기업의 설립과 그 예비창업활동을 말한다.
2. “학내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또는 실험실 안에서 공장 등을 설립하고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겸직”이라 함은 교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4. “창업관련 활동”이라 함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설립 6년 이내인 제3자의 창업 기업에 등기이사 또는 세법상 대주주로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창업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 제5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창업교원은 대학의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현장실습, 취업 및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의 창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창업과 관련하여 활동을 보장할 수 있으나 [별지7호]에 명시된 업종으로는 창업할 수 없다.

④ 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의 교수 창업에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주관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이 되며, 인사 관련사항은 인사 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 시행한다.

제 2 장 창업절차 및 지원관리

제5조(창업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소속 학과장,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에 대한 지원범위 및 내용,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산학협력단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1. 창업지원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겸(휴)직 허가신청서(별지 2호 서식)
3. 사업계획서(별지 3호 서식)
4. 3개년 추정재무제표 1부
5. 창업대상 기술설명서 1부
6. 예비창업자 이력서
7. 창업승인 협약서
8. 사용 기자재 목록
9. 매출내역 상세서

10.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자유 서식)

제6조(창업심사 및 허가) ① (예비)창업교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창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예비창업교원은 창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의 확인을 거쳐 산학협력단에 창업허가를 신청한다.
2. 산학협력단은 제5조 제1호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반 요건과 서류의 구비사항을 최종 확인한 후, 교무처에 겸(휴)직을 추천한다.
3. 겸(휴)직승인을 득한 자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창업 승인을 통보한다.

② 창업허가와 겸직허가를 득한 (예비)창업교원은 창업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표준 협약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산학협력단과 창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창업 대상 기술
2. 창업 및 운영관련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시설, 인력, 기술, 자금지원 등)
3. 창출된 부가가치의 일정분에 대한 주식매수 선택권(stock option) 대학부여, 로열티 지불 등 환원계획
4. 기타 소속학과(부) 업무공백의 보완 등 창업관련 필요사항

③ 창업협약 체결을 완료한 예비창업교원은 창업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창업 허가를 받은 교원은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임대계약 등 다음의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에 알려야 한다.

1. 창업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
2. 법인형태의 창업은 창업 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상업등기소에 법인등록

⑥ 창업기업의 대표로서 책임에 대비한 당해 기업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⑦ 창업교원은 창업허가, 겸직, 창업공간 사용에 대하여 3년마다 재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창업제한) 교원창업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창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창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2. 환경적인 문제 및 과도한 에너지사용 등으로 학교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5. 기타 창업의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제8조(창업승인 취소) 산학협력단장은 창업승인을 받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한 창업협약을 소정의 기일 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
2. 규정 제11조에 의한 겸직 또는 휴직을 소정의 기일 내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3. 규정 제6조제5항에 의한 기업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법인등록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지 않는 경우
4. 창업관련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창업관련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제9조(시설물 사용) ① 교원창업자가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대학시설물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실험실내에 학내창업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실험실공강설치(실험실사용)승인신청서(별지 4-1호 서식)
2. 제조시설 배치도(제조업에 한함)
- ② 시설물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교원창업자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경우, 제반 비용 및 관련 절차는 창업보육센터 관련규정에 따른다.
- ③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④ 교원창업자 및 그 창업기업 소속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학의 시설물에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대학은 교원창업자에게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⑥ 대학이 소유한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 신고 및 보고) ① 창업교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 받은 신청서상의 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② 본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된 계획서 및 사유서
2. 기타 변경 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창업교원은 승인 기간 동안 당해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 매출내역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공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실공장 변경신청서(별지 4-2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겸직 및 휴직) ① 제6조에 의한 창업허가를 득한 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직(휴직) 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승인 1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교원인사규정 등에 따라 총장의 겸직(휴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별지 2호 서식)

② 창업승인을 득한 교원의 겸직 및 휴직의 승인 업무는 산학협력단과 교무연구처간 공문에 의해 처리한다.

③ 교원의 창업겸직(휴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창업겸직기간을 변경(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3개월 전에 그 기간의 변경(연장)을 신청(별지 5호 서식)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학생의 교육, 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겸직에 따른 소속 업무의 공백에 대한 보완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겸직허가의 취소)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창업교원의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사유와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2.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사유와 관련된 행위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3. 창업과 관련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4.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대학과 악정한 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
6. 창업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7. 기타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책임수업시간 감면) ① 창업교원은 책임수업시간 감면이 필요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의 확인을 거쳐 산학협력단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에 신청한다. (인사규정 제34조의3)

② 산학협력단은 창업교원의 요청이 있을 시 책임수업시간 감면을 추천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는 책임수업시간 감면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감면을 추천한다.

2. 교원창업으로 인한 책임수업시간 감면은 연구감면, 보직감면 등 다른 감면과 중복될 수 없다.

제14조(창업허가에 따른 대가) ① 창업교원은 창업허가에 대한 조건으로 창업기업의 보통주식 5%를 산학협력단에 기부한다.(단, 자본금 1억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시점의 자본금이 1억 미만 시에는 1억 증자시점까지 5%를 무상기부하고, 1억 초과부터 산학협력단은 보통주 소유 일반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② 창업교원의 주식기부 시점은 창업 직후를 원칙으로 하고, 교원창업기업이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법인전환 후에 기부한다. 세부적인 기부방식은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제반절차와 양식에 따른다.(단, 기부시점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창업교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규정 제6조에 따라 교원창업 이전에 창업허가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규정 제1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창업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의 창업기업 총주식의 5%를 산학협력단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15조(창업기간) ① 교원창업의 창업기간은 예비벤처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인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최초 겸직 허가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창업을 위한 겸직 허가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창업공간 및 사업자 주소지를 대학 외부로 이전하여야 하고, 교수창업이 아닌 외부기관 겸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교수의 연구실 또는 실험실이 아닌 교내 별도의 창업공간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주소지를 배정받은 공간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교수창업이 아닌 외부기관 겸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창업을 위한 겸직 허가일로부터 6년 이내에 모든 재정적 기여 이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경영지원 및 연수) 교원 창업 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대학(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자원을 활용하여 회계, 마케팅 및 법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창업 교원의 의무

제17조(입주시설의 관리자) 학내창업 기업이 입주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창업기업 입주 시설물을 관리하는 해당 건물 관리 부서장이 된다.

제18조(자료제출 요구) 대학(산학협력단)은 창업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기업경영 현황 자료
2. 기술개발에 관한 자료
3. 본교 학생 현장실습 및 채용에 관한 자료
4. 기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제19조(방재의무) ① 창업교원은 대학의 시설 및 장비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이 설립한 법인은 본인 및 관련 종사자의 각종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입주 개시일 이전까지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질, 폐기물 등은 창업교원의 책임 하에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
④ 중량물이나 대형 물품 및 형오물품을 반입·반출할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 창업교원은 창업 활동 및 입주로 인하여 인지한 비밀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학생지도) 창업 활동을 하는 교원은 학생을 현장실습 및 취업 이외의 사유로 창업회사에 참여시킬 수 없다.

제22조(결산서 제출) 창업교원은 매년 회계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당해 기업경영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퇴거) ① 창업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사용기간의 만료일 이전이라도 창업기업을 퇴거시킬 수 있다.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등으로 교육·연구 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4. 교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법령 및 이 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퇴거 시 사용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 ① 창업교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학 내의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화재, 도난 또는 창업교원 및 관련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창업기업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대학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의 관련 법령 및 「극동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1호 서식】 창업지원신청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학내 창업지원신청서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학외 </div>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주소				
창업회사	회사명		업종		소재지
	자본금		종업원수		
창업기술	특허와 연계된 연구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연구과제의 제원		연구비		
	기술의명칭		위탁자		
	특허번호		발명자		
창업기간	겸직		휴직		
창업기간 중의 복무계획	강의				
	학생지도				
	외부수탁연구				
창업자 지원신청 사항					
창업기간 종료 후 계획					
위와 같이 창업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인					
극동대학교 총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창업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극동대학교 총장					

겸(휴)직허가신청서					
소속	대학	학과(부)	직급	성명	
주당수업시간수	학부:	대학원:	기타:	계:	보직명
창업기업 관련사항	기업체명			상장법인여부	
	종업원수		총자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수행기간	(년)			
	근무시간	* 주 또는 월당 시간수 등 구체적으로 기재 (주당 총 근무시간은 40시간 기준)			
보험가입 여부	* 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창업에 따른 교원임무(학생교육, 지도연구)의 지장에 관한 창업자 소견					
* 상기 신청서에 관련된 근거자료 추후 제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p>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제1항 및 극동대 교원창업에관한규정 제5조의 허가요건을 준수하고 창업자로서 직무수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창업에 따른 겸직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_____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자: 학과(부)장 _____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학 장 _____ (인)</p>					
극동대학교 총장 귀하					
* 구비서류 1. 겸직에 따른 소속 업무의 공백에 대한 보완 조치 계획서 1부					
위와 같이 겸직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극동대학교 총장					

사업계획서			
<p>작성일:</p> <p>기업명:</p> <p>대표자: _____ (인)</p>			
1. 회사 현황			
1. 개요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당해년도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경영직: 명, 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능직: 명, 합계: 명 * 전년도 고용인원(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자가, 임차) (공장등록, 미등록) 대지 : ㎡, 건평 : ㎡		
특 기 사 항	*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기재		
2. 주주구성 및 경영진 (단위 : 백만원)			
주 주 구 성			
주 주 명	금 액	지 분 율	대표자와의 관계
계			
경 영 · 기 술 진			
성 명	나 이	직 위	학력 및 경력

3. 주요설비 보유현황

시 설 명	구 입 일	규 격	수 량	용 도	금 액
					합계:

4. 금융거래 현황(20 . . . 현재)

대출기관	운전/시설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기한	금 액

5. 지재권 현황

권리	명 칭	출원/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등록) 일	비 고

6. 인증/기타(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등) 현황

구분	명 칭	등록일	유효기간	등록번호	발행기관

7. 투자 현황

구분	명 칭	투자금액	지원기관(업)	기 간	비 고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원과제 참여현황(창업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과제)

구분	사업명	기관명	사업세부내용	금액	기간

II. 사업 계획

1. 사업아이템의 개요

내 용	
특 성	
사업전망	

※ 부족 시, 별지 작성

2. 사업추진계획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추진 방법
부터	까지		

※ 창업준비 및 창업까지를 1단계, 창업이후를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기재

3. 업체운영계획

창업자 역할	
창업후 계획	
자금조달방법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극동대학교 교수창업 지원 및 승인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 ① 극동대학교는 교수창업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 ② 창업자 및 창업관련자의 정보 등을(창업기업명,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이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금융정보 등) 수집하여 창업자와의 연락, 사업의 안내 및 진행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①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창업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입수와 확인에 사용되며 사업 종료 후 3년 보관됨
- ②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팩스, 등기 등) 보존기간 : 창업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입수 후 1개월 보관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해당 사업에 관련한 안내와 업무처리 불가

※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

창업기업명 : _____

대 표 자 : _____(직인)

극동대학교 총장 귀하

실험실공장설치(실험실사용)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실험실 개요	실험실명		소속	
	책임교수 성명 (신청인)	(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실험실 내용	실험실총면적(㎡)			
	제조시설명세			
사업계획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업종	연구제품명	사용기간
<p>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설치(실험실사용) 승인을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입주시설 관리책임자 _____(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극동대학교 총장 귀하</p>				
<p>※구비서류 1. 실험실별 기자재 배치도 1 부</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실험실공장설치(실험실사용)를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극동대학교 총장</p>				

교원창업 표준 협약서

국동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교수(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의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9조(창업절차 이행)에 의거하여 “을”의 창업승인에 따른 “갑”과 “을”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 내용) ① 갑”은 “을”이 창업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을”이 허가 받은 창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 대상 기술:
2. 창업 및 운영관련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 별도첨부
3. 창출된 부가가치의 일정분에 대한 주식매입 선택권(stock option) 대학부여, 로열티 지분 등 환원계획: 별도첨부
4. 기타 소속학과(부) 업무공백의 보완 등 창업관련 필요사항: 별도첨부

제3조(창업 기간) “을”의 창업 및 운영 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로 한다.

제4조(“갑”의 의무) “갑”은 “을”의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을”의 창업기업 대표자/임원 경력 허가
2. 창업기업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
3. 실험실공장 설치, 사용 및 변경 지원
4. 복리시설 이용 및 정보통신망 사용 지원

제5조(출입) “갑”은 보안, 위생, 방범, 방화, 구호 등 관리상 급박한 경우에는 “을”의 창업기업(실험실) 구역 내에 출입할 수 있다.

제6조(입·출입 관리) ① “을”의 창업기업(실험실)내 출입문 열쇠는 “을”과 “갑”이 각 1개씩 보관한다.

② “을”이 열쇠 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을”의 기부) “을”은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갑”에게 기부하며, 협약 체결 시부터 “갑”은 “을”의 주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제8조(표시물의 게시) ① “을”이 사업상 표시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갑”은 표시물 게시 규격 등을 정하여 “을”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 사용) ① “을”은 “갑”의 자산과 “을”의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내의 공용 시설 및 개인자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실험실공장 설치, 사용 및 변경 등에 필요한 경비, 실험실공장 이외의 별도 사용공간이 필요하여 배정 받은 경우에 그 공간에 대한 용도변경 및 신규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제비용(냉·난방비,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및 특정폐기물 처리비 등 공공요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을”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시설물들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전시실, 회의실, 장비실 등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를 미리 “갑”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① 학내 창업기업은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은 학내 창업기업(실험실창업)의 퇴거 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신고의무) “을”의 창업기업(실험실창업)이 1개월 이상 교내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변경사항 신고 의무) “을”은 사업 및 연구과제 내용의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방재의무) ① “을”의 창업기업은 대학의 시설 및 장비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 유지관리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을”의 창업기업은 본인 및 관련 종사자의 각종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입주 개시일 이전까지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질, 폐기물 등은 “을”의 창업기업의 책임 하에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을”의 창업기업이 “갑”의 시설로 종량물이나 대형 물품 및 혐오물품을 반입·반출할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속박제한) 창업기업(실험실)내에서의 속박은 금지한다. 다만, 연장업무 등으로 속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을”의 창업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의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손해시설과 동등한 제품 또는 동등한 금액으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면책) “갑”은 천재지변, 화재, 도난 또는 창업교원 및 관련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의 창업기업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협약내용 해지 및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을”과 협약을 해지하고, “을”의 창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 허가 당시 제출한 사업계

확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갑”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망 또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협약의 불이행 또는 “갑”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갑”이 협약을 해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사유 및 예정일을 명시하여 예정일 20일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이 해지 및 허가 취소 예정일을 통보 받고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갑”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관할) 본 협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갑”의 주된 사무소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기타)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 **극 동 대 학 교 총 장** _____ (인)

을 : _____ **학 과 교 수** _____ (인)

[별지7호]

창업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게임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창업승인 절차도 >

